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275 제출연월일: 2024. 7. 26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에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7조의2(건축물의 존치)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지구 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존치시설 소유자에 대한 비용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따라 존치하게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27조의2(제40조의17 및 제52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 - 1. 이 법 시행 전에 제17조(제52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)에 따라 승인·변경승인 및 고시된 지구계획 등
 - 2. 이 법 시행 전에 제40조의8제1항 및 제40조의17제1항에 따라 준

용되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승인·변경승인 및 고시된 복합사업계획

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계획이 이 법 시행 이후 변경승인되어 고 시된 경우 그 변경된 계획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햀 제27조의2(건축물의 존치 등) ① 제27조의2(건축물의 존치) 공공주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 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지구조성사업에 지 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.

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 유자에게 도로, 공원, 상하수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기준 •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택사업자는 주택지구에 있는 기 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 여도 지구조성사업에 지장이 없 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.

정

아

개